「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03월 07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6일 회부

○ 상정일자 : 제27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2년 3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가족복지과장)

가. 제안이유

2021. 3. 23.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)가 개정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·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 규정 신설(안 제8조)

-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보호, 청소년 보호 효율적 수행 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섭)

○ 본 조례안은

2021. 3. 23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10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) 개정에 따른 '평창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'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은

안 제8조에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·공공기관·청소년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'평창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'를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이며,

○ 검토결과,

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구축·운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· 운영)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 복지 및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, 공공기관,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평창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“통합지원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체계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8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 복지 및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, 공공기관, 「청소년기본법」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평창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“통합지원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체계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를 따른다.
제8조 ~ 제13조 (생 략)	제9조 ~ 제14조 (현행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)